

하남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

발의자 : 정병용 의원

제출일 : 2025. 8.

1. 제안이유

- 가. 급변하는 직업 세계 속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주도적으로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- 나.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,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 (안 제3조)
- 다. 진로교육 활성화 사업의 범위를 명시 (안 제4조)
- 라.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(안 제5조)
- 마. 이용대상의 범위(안 제6조)
- 바. 운영 및 관리(안 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한종수)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진로교육법」에 근거하여, 청소년이 변화하는 사회 및 직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진로탐색 및 설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, 진로체험 지원센터의 설치 및 진로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, 진로교육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

- 검토 결과,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됨

■ 「진로교육법」 [시행 2022. 7. 21.] [법률 제18298호, 2021. 7. 20., 타법개정]

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, 북한이탈주민,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“공공기관”이라 한다)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.